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 -259호**달성2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127(2013. 9. 23)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달성2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 기정 : 대구도시공사 사장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 변경 : 대구도시공사 사장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
대구광역시시장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 금회 변경부분에 한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서남권 일대의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고 대구권 산업벨트와 연계 계열화, 협업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의 개요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2,704,735.0	100.0(100.0)	2,704,735.0	100.0(100.0)	-
산업단지	소 계	2,273,381.7	84.0(100.0)	2,273,381.7	84.0(100.0)	-
	산업시설용지	1,377,824.3	50.9(60.6)	1,424,542.2	52.7(62.7)	증)46,717.9
	지원시설	108,395.2	4.0(4.8)	136,395.2	5.0(6.0)	증)28,000.0
	공공시설용지	655,575.8	24.2(28.8)	662,032.9	24.5(29.1)	증)6,457.1
	도로	348,297.0	12.9(15.3)	359,418.1	13.3(15.8)	증)11,121.1
	보행자전용도로	7,124.0	0.3(0.3)	7,124.0	0.3(0.3)	-
	주차장	14,492.1	0.5(0.6)	14,492.1	0.5(0.6)	-
	근린공원	65,093.0	2.4(2.9)	65,093.0	2.4(2.9)	-
	완충녹지	191,767.4	7.1(8.4)	187,103.4	6.9(8.2)	감)4,664.0
	공공공지	27,802.2	1.0(1.2)	27,802.2	1.0(1.2)	-
	공공청사	1,000.1	0.0(0.1)	1,000.1	0.0(0.1)	-
	공급처리시설용지	131,586.4	4.9(5.8)	50,411.4	1.9(2.2)	감)81,175.0
	변전소	7,202.9	0.3(0.3)	7,202.9	0.3(0.3)	-
	배수지	14,362.4	0.5(0.6)	14,362.4	0.5(0.6)	-
	폐수처리장	12,925.3	0.5(0.6)	12,925.3	0.5(0.6)	-
	저류지	15,631.4	0.6(0.7)	15,631.4	0.6(0.7)	-
	폐기물처리장	81,175.0	3.0(3.6)	-	-	감)81,175.0
	통신시설	289.4	0.0(0.0)	289.4	0.0(0.0)	-
주거단지	소 계	431,353.3	16.0(100.0)	431,353.3	16.0(100.0)	-
	주거용지	204,917.0	7.6(47.5)	204,917.0	7.6(47.5)	-
	단독주택	58,816.6	2.2(13.6)	58,816.6	2.2(13.6)	-
	공동주택	144,404.1	5.3(33.5)	144,404.1	5.3(33.5)	-
	근린생활시설	1,696.3	0.0(0.4)	1,696.3	0.0(0.4)	-
	상업용지	15,814.4	0.6(3.7)	15,814.4	0.6(3.7)	-
	공공시설용지	210,621.9	7.8(48.8)	210,621.9	7.8(48.8)	-
	도로	115,002.1	4.2(26.7)	115,002.1	4.2(26.7)	-
	보행자전용도로	2,303.1	0.1(0.5)	2,303.1	0.1(0.5)	-
	주차장	2,827.0	0.1(0.6)	2,827.0	0.1(0.6)	-
	근린공원	29,613.8	1.1(6.9)	29,613.8	1.1(6.9)	-
	어린이공원	7,692.9	0.3(1.8)	7,692.9	0.3(1.8)	-
	완충녹지	29,120.6	1.1(6.7)	29,120.6	1.1(6.7)	-
	공공공지	7,223.4	0.3(1.7)	7,223.4	0.3(1.7)	-
	학교	12,838.5	0.5(3.0)	12,838.5	0.5(3.0)	-
	유치원	2,026.7	0.1(0.5)	2,026.7	0.1(0.5)	-
	종교	1,252.6	0.0(0.3)	1,252.6	0.0(0.3)	-
	오수중계펌프장	553.0	0.0(0.1)	553.0	0.0(0.1)	-
	가스공급설비	20.0	0.0(0.0)	20.0	0.0(0.0)	-
	통신시설	148.2	0.0(0.0)	148.2	0.0(0.0)	-

단, ()는 단지별 구성비임

※ 금회 기정면적은 기 고시(국토교통부고시 2015-76호, 국토교통부고시 2015-292호)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지구계 조정(달성2차일반산업단지 면적 일부 축소)사항을 반영한 면적임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응암리, 내리 일원

나. 면 적

- 2,704,735.0㎡ (산업단지 : 2,273,381.7㎡, 주거단지 : 431,353.3㎡)

※ 금회 개발계획 변경 면적 : 88,166.7㎡

※ 금회 면적변경사항은 없으나, 기 고시(국토교통부고시 2015-76호, 국토교통부고시 2015-292호)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지구계 조정(달성2차일반산업단지 면적 일부 축소) 사항을 반영한 면적임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가. 시행 방법 (변경없음)

- 공영개발

나. 시행 기간 (변경)

-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개발계획 승인일(2022년) ~ 2025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각호의 사항

I.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변경)

1. 사업대상지 총괄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704,735.0	-	2,704,735.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8,647.3	-	158,647.3	5.9	
제3종일반주거지역	203,782.5	-	203,782.5	7.5	
일반상업지역	39,309.7	-	39,309.7	1.5	
일반공업지역	1,992,673.1	감) 36,061.8	1,956,611.3	72.3	
준공업지역	208,208.8	증) 36,061.8	244,270.6	9.0	
자연녹지지역	102,113.6	-	102,113.6	3.8	

※ 금회 기정면적은 기 고시(국토교통부고시 2015-76호, 국토교통부고시 2015-292호)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지구계 조정(달성2차일반산업단지 면적 일부 축소)사항을 반영한 면적임

2. 산업단지 (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273,381.7	-	2,273,381.7	100.0	
공업 지역	소계	2,200,881.9	-	2,200,881.9	96.8	
	일 반 공 업 지 역	1,992,673.1	감) 36,061.8	1,956,611.3	86.1	
	준 공 업 지 역	208,208.8	증) 36,061.8	244,270.6	10.7	
녹지 지역	소계	72,499.8	-	72,499.8	3.2	
	자연녹지지역	72,499.8	-	72,499.8	3.2	

※ 금회 기정면적은 기 고시(국토교통부고시 2015-76호, 국토교통부고시 2015-292호)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지구계 조정(달성2차일반산업단지 면적 일부 축소)사항을 반영한 면적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m ²)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	구지면 내리 837-9번지 일원	일 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6,061.8	400%이하	· 이차전지 등 제조기반 에너지 특화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의 토 지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3. 주거단지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431,353.3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362,429.8	84.0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58,647.3	36.8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03,782.5	47.2	
상 업 지 역	소 계	39,309.7	9.1	
	일 반 상 업 지 역	39,309.7	9.1	
녹 지 지 역	소 계	29,613.8	6.9	
	자 연 녹 지 지 역	29,613.8	6.9	

※ 금회 기정면적은 기 고시(국토교통부고시 2015-76호, 국토교통부고시 2015-292호)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지구계 조정(달성2차일반산업단지 면적 일부 축소)사항을 반영한 면적임

II.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산업단지) (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23	50	보조간선도로	3,800	구지면 응암리 광로 3-19	구지면 유산리 광로 3-17	일반도로	-	대고 제1999-38호 (99.4.20)	
기정	대로	2	96	30	보조간선도로	2,280	광로 3-16	광로 3-17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변경	대로	2	96	30	보조간선도로	2,280	대로 3-79	광로 3-25	일반도로	-	-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	대로	3	1	27	주간선도로	4,537	대로 2-1 구지면 수리리 624-1답	대로 1-61 구지면 대암리 136-4도	일반도로	-	대고 제1999-38호 (99.4.20)	
기정	대로	3	55	25	보조간선도로	1,473	광로 3-17	중로 1-3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대로	3	56	25	보조간선도로	1,236	광로 2-23	광로 3-17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중로	1	257	20	집산도로	779	대로 2-96	대로 2-96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중로	1	258	20	집산도로	4,238	대로 2-96	대로 2-96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중로	1	265	20	집산도로	157	광로 2-23	중로 1-258	일반도로	-	대고 제2004-142호 (04.9.30)	-
기정	중로	1	266	20	집산도로	155	광로 3-17	중로 1-258	일반도로	-	대고 제2004-142호 (04.9.30)	-
기정	중로	2	309	15	집산도로	719	중로 1-257	중로 1-257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중로	2	310	15	국지도로	15	중로 2-309	구지면 내리 837-8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중로	2	311	15	국지도로	15	중로 1-257	구지면 내리 837-9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2	311	15	국지도로	167	중로 1-257	중로 2-661	일반도로	-	-	노선연장
기정	중로	2	312	15	집산도로	486	중로 1-258	중로 3-279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중로	2	313	15	집산도로	1,233	광로 2-23	광로 3-17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중로	2	314	15	집산도로	885	중로 1-258	중로 1-258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신설	중로	2	661	15	국지도로	552	대로 2-96	중로 2-311	일반도로	-	-	노선신설
기정	중로	3	278	12	국지도로	386	중로 1-258	중로 3-279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중로	3	279	12	국지도로	603	중로 1-258	중로 3-278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중로	3	280	12	국지도로	326	대로 3-55	대로 3-56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중로	3	281	12	국지도로	257	중로 3-280	중로 3-280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중로	3	282	12	국지도로	22	대로 3-56	중로 3-281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소로	1	구8	10	특수도로	87	중로 1-3	중로 1-258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소로	1	구9	10	특수도로	38	중로 1-258	구지면 내리 842-18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소로	1	구10	10	특수도로	81	중로 1-3	중로 1-258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소로	1	구13	10	특수도로	18	대로 3-56	중로 3-281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소로	1	구14	10	특수도로	60	중로 3-280	중로 3-281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기정	소로	1	구15	10	특수도로	30	중로 3-280	구지면 예현리 768-26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가정	소로	1	구16	10	특수도로	30	중로 3-280	구지면 예현리 768-26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가정	소로	1	구17	10	특수도로	126	중로 1-258	구지면 내리 852-2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가정	소로	1	구18	10	특수도로	123	중로 1-258	구지면 예현리 768-8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가정	소로	1	구21	10	특수도로	119	중로 1-257	구지면 내리 837-1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가정	소로	1	구22	10	국지도로	94	중로 1-258	중로 3-278	일반도로	-	대고 제2013-907호 (13.6.20)	-
가정	소로	1	구23	10	국지도로	128	소로 1-구22	소로 1-구24	일반도로	-	대고 제2013-907호 (13.6.20)	-
가정	소로	1	구24	10	국지도로	88	중로 1-258	중로 3-278	일반도로	-	대고 제2013-907호 (13.6.20)	-
가정	소로	2	구54	8	국지도로	88	중로 1-258	구지면 예현리 762-9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가정	소로	2	구27	8	국지도로	628	대로 2-96	소로 2-구29	일반도로	-	달성고 제2002-22호 (02.5.29)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2-96호선	대로 2-96호선	■ 일부구간 선형변경 - B = 30m, L = 2,280m	· 중로 2-661호선 신설에 따른 대로2-96호선 변속차로구간 선형변경
중로 2-311호선	중로 2-311호선	■ 노선연장 - B = 15m, L = 167m 증) 152m	· 이차전지 등 제조기반 에너지 특화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 하여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금회 노선연장을 하고자 함
-	중로 2-661호선	■ 노선신설 - B = 15m, L = 552m	· 이차전지 등 제조기반 에너지 특화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 하여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금회 노선을 신설하고자 함

■ 도로 결정 조서 (주거단지)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23	50	보조간선도로	3,800	구지면 응암리 광로3-19	구지면 유산리 광로3-17	일반도로	-	대고 제1999-38호 (99.4.20)	
기정	중로	1	259	20	집산도로	353	광로 2-23	대로 3-49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중로	1	260	20	집산도로	386	광로 2-23	중로 2-31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중로	2	315	15 ~19	집산도로	1,744	광로 2-23	광로 3-17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중로	3	283	12	집산도로	1,035	중로 1-259	중로 1-259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중로	3	284	12	집산도로	299	중로 1-260	중로 2-31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중로	3	285	12	집산도로	647	중로 1-260	중로 2-31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중로	3	286	12	집산도로	197	중로 1-260	중로 3-28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1	구22	10	국지도로	73	소로 1-구23	소로 1-구23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1	구23	10	국지도로	253	중로 3-283	중로 3-283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1	구24	10	국지도로	244	중로 3-285	중로 3-28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1	구25	10	국지도로	82	중로 3-286	중로 3-28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1	구26	10	국지도로	96	중로 3-286	중로 3-28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55	8	국지도로	370	중로 1-259	소로 2-구5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56	8	국지도로	70	소로 2-구55	소로 2-구5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가정	소로	2	구57	8	국지도로	20	중로 1-259	소로 2-구5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2	구58	8	국지도로	528	중로 3-283	중로 3-283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2	구59	8	국지도로	315	소로 2-구58	소로 2-구58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2	구60	8	국지도로	76	중로 3-283	소로 2-구58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2	구61	8	국지도로	75	중로 3-283	소로 2-구58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2	구62	8	국지도로	466	중로 3-284	중로 3-284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2	구63	8	국지도로	271	소로 2-구62	소로 2-구62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2	구64	8	국지도로	69	중로 3-284	소로 2-구62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2	구65	8	국지도로	69	중로 3-284	소로 2-구62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2	구66	8	국지도로	15	소로 2-구62	소로 2-구72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2	구67	8	국지도로	339	중로 3-285	중로 3-28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2	구68	8	국지도로	164	중로 3-285	소로 2-구67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2	구69	8	국지도로	94	소로 2-구68	소로 2-구67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2	구70	8	국지도로	26	소로 2-구67	소로 2-구68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2	구71	8	특수도로	14	광로 2-23	소로 2-구55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가정	소로	2	구72	8	특수도로	16	광로 2-23	소로 2-구66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2	구73	8	특수도로	18	소로 1-구24	소로 2-구67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3	구51	6	특수도로	53	중로 1-259	중로 3-283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3	구52	6	특수도로	20	광로 2-23	소로 2-구55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3	구53	6	특수도로	95	광로 2-23	중로 3-283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3	구54	6	특수도로	9	중로 2-315	소로 3-구55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3	구55	6	국지도로	10	소로 2-구62	소로 3-구54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3	구56	6	특수도로	36	광로 2-23	소로 2-구62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3	구57	6	특수도로	16	광로 2-23	소로 2-구67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3	구58	6	특수도로	28	소로 2-구68	소로 2-구67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3	구59	6	특수도로	27	소로 2-구69	소로 2-구68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3	구60	6	특수도로	14	중로 3-285	소로 2-구69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가정	소로	3	28	6	특수도로	28	소로 3-27	광로 2-23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 (09.09.30)	
가정	소로	3	41	6	특수도로	32	소로 2-45	중로 2-283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 (09.09.30)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2	6	특수도로	23	소로 3-43	중로 2-283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 (‘09.09.30)	

2. 공간시설

가. 공 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	-	191,641.9		
기정	123	산업단지 제1호근린공원	근린공원	내리 840공	34,196.4	대고 제2004-2호 (‘04.1.10)	산업단지
기정	124	산업단지 제2호근린공원	근린공원	예현리 768-8공	10,295.9	대고 제2004-2호 (‘04.1.10)	산업단지
기정	125	산업단지 제3호근린공원	근린공원	예현리 760-1공	10,300.9	대고 제2004-142호 (‘04.9.30)	산업단지
기정	126	산업단지 제4호근린공원	근린공원	내리 838공	10,299.8	대고 제2004-142호 (‘04.9.30)	산업단지
기정	74	창리공원	근린공원	응암리 1177공	118,856.0	대고 제1999-38호 (‘99.4.20)	주거단지
기정	308	주거단지 제1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리 1181-3공	1,780.2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기정	309	주거단지 제2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리 1191-5공	1,951.0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기정	310	주거단지 제3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리 1198-4공	2,232.4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기정	311	주거단지 제4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리 1215-5공	1,729.3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나. 녹지 (변경)

■ 녹지 변경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220,888.0	감) 4,664.0	216,224.0		
	소계				191,767.4	감) 4,664.0	187,103.4		
기정	117	산업단지 제1호녹지	완충녹지	내리 835공	2,094.1	-	2,094.1	대고 제2004-2호 (‘04.1.10)	산업단지
변경	118	산업단지 제2호녹지	완충녹지	내리 837-1공 일원	47,028.4	감) 4,664.0	42,364.4	대고 제2004-2호 (‘04.1.10)	산업단지
기정	119	산업단지 제3호녹지	완충녹지	내리 836공 일원	19,034.9	-	19,034.9	대고 제2004-2호 (‘04.1.10)	산업단지
기정	120	산업단지 제4호녹지	완충녹지	내리 841공일원	123,610.0	-	123,610.0	대고 제2004-2호 (‘04.1.10)	산업단지
	소계				29,120.6	-	29,120.6		
기정	121	주거단지 제1호녹지	완충녹지	응암리 1183공 일원	9,236.0	-	9,236.0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기정	122	주거단지 제2호녹지	완충녹지	응암리 1194공 일원	4,142.3	-	4,142.3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기정	123	주거단지 제3호녹지	완충녹지	응암리 1195공 일원	5,882.0	-	5,882.0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기정	124	주거단지 제4호녹지	완충녹지	응암리 1213공 일원	9,860.3	-	9,860.3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 금회 기정면적은 기 고시(국토교통부고시 2015-76호, 국토교통부고시 2015-292호)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지구계 조정(달성2차일반산업단지 면적 일부 축소)사항을 반영한 면적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8	산업단지 제2호녹지	■ 완충녹지 면적축소 A = 47,028.4㎡ → 42,364.4㎡ 감) 4,664.0㎡	· 폐기물처리장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완충녹지 일부구간은 축소하며, 폐수처리장 경계부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일부구간은 금회 신설하고자 함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산업단지 제1호배수지	예현리 762-9수	14,362.4	대고 제2004-2호 (04.1.10)	산업단지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변경없음)

■ 학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A232	주거단지 제1호초등학교	초등학교	응암리 1211학	12,838.5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5.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7	산업단지 제1호폐기물 처리장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내리 837-9잡	81,175.0	감) 81,175.0	-	대고제2004-2호 (04.1.10)	산업단지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7	산업단지 제1호폐기물 처리장	■ 폐기물처리장 폐지 A = 81,175.0㎡ → 0㎡ 감) 81,175.0㎡	· 폐기물처리장 폐쇄승인 결정(21. 11. 7, 환경부)에 따라 금회 시설을 폐지하고자 함

나. 수질오염방지사설 (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사설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2	산업단지제1호 폐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시설	내리 837-8잡	12,925.3	대고 제2004-2호 (‘04.1.10)	산업단지

III.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

□ 산업단지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신설	달성1	달성2차일반산업단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일원	88,166.7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달성1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 88,166.7m ²	· 이차전지 등 제조기반 에너지 특화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자 하며,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 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비 고
합	계	88,166.7	100.0	
	산업시설용지	46,717.9	53.0	
	자원시설용지	28,000.0	31.8	
	공공시설용지	13,448.8	15.2	
	도로	11,371.1	12.9	
	완충녹지	2,077.7	2.3	

2)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계	88,166.7	100.0	
일 반 공 업 지 역	56,052.2	63.6	
준 공 업 지 역	32,114.5	36.4	

주 : 용도지역 면적은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 도 로 (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96	30	보조간선도로	2,280	광로 3-16	광로 3-17	일반 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변경	대로	2	96	30	보조간선도로	2,280 (115)	대로 3-79	광로 3-25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311	15	국지도로	15	중로 1-257	구지면 내리 837-9	일반 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
변경	중로	2	311	15	국지도로	167	중로 1-257	중로 2-661	일반 도로	-	-	노선연장
신설	중로	2	661	15	국지도로	552	대로 2-96	중로 2-311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주 : ()는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2-96호선	대로 2-96호선	■ 일부구간 선형변경 - B = 30m, L = 2,280m(115m)	· 중로 2-661호선 신설에 따른 대로2-96호선 변속 차로구간 선형변경
중로 2-311호선	중로 2-311호선	■ 노선연장 - B = 15m, L = 167m 증) 152m	· 이차전지 등 제조기반 에너지 특화기업 유치 및 육 성을 위하여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 며, 그에 따라 금회 노선연장을 하고자 함
-	중로 2-661호선	■ 노선신설 - B = 15m, L = 552m	· 이차전지 등 제조기반 에너지 특화기업 유치 및 육 성을 위하여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 며, 그에 따라 금회 노선을 신설 하고자 함

2) 공간시설 (변경)

■ 녹지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8	산업단지 제2호녹지	완충녹지	내리 837-1공 일원	47,028.4 (-)	감) 4,664.0	42,364.4 (2,077.7)	대고 제2004-2호 (04.1.10)	

주 : ()는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8	산업단지 제2호녹지	■ 완충녹지 면적축소 A = 47,028.4m ² (0m ²) → 42,364.4m ² (2,077.7m ²) 감) 4,664.0m ²	· 폐기물처리장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완충녹지 일부구간은 축소하며, 폐수처리장 경계부의 환 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일부구간은 금회 신설 하고자 함

3. 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 (변경)

1) 산업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1	BL1	46,717.9	1	6,470.5	
			2	5,901.8	
			3	5,655.2	
			4	5,655.2	
			5	5,655.2	
			6	5,655.2	
			7	5,862.4	
			8	5,862.4	

2) 지원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2	BL2	28,000.0	1	10,000.0	
			2	18,000.0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1) 산업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1)	산업시설용지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유치업종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이하	
		용 적 률		•350%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1m	
		형 태		-	
		색 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함	

2) 지원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2)	지원시설용지	용 도	허용용도	•2-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2-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이하	
		용 적 률		•400%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1m	
		형 태		-	
		색 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함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1)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관한 계획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산업시설용지 자원시설용지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차량출입불허구간 내에서 차량진출입은 불허	세부사항 도면참조

□ 주거단지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39	달성2차일반산업단지(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일원	431,353.3	대고 제2004-2호 (04.1.10)

※ 금회 기정면적은 기 고시(국토교통부고시 2015-76호, 국토교통부고시 2015-292호)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지구계 조정(달성2차일반산업단지 면적 일부 축소)사항을 반영한 면적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비 고
계		431,353.3	100.0	
주 거 용 지		204,917.0	47.5	
	단 독 주 택	58,816.6	13.6	
	공 동 주 택	144,404.1	33.5	
	근린생활시설	1,696.3	0.4	
상 업 용 지		15,814.4	3.7	
공 공 시 설 용 지		210,621.9	48.8	
	도 로	115,002.1	26.7	
	보 행 자 전 용 도 로	2,303.1	0.5	
	주 차 장	2,827.0	0.6	
	근 린 공 원	29,613.8	6.9	
	어 린 이 공 원	7,692.9	1.8	
	완 충 녹 지	29,120.6	6.7	
	공 공 공 지	7,223.4	1.7	
	학 교	12,838.5	3.0	
	유 치 원	2,026.7	0.5	
	종 교	1,252.6	0.3	
	오 수 중 계 펌 프 장	553.0	0.1	
	가 스 공 급 설 비	20.0	0.0	
	통 신 시 설	148.2	0.0	

※ 금회 기정면적은 기 고시(국토교통부고시 2015-76호, 국토교통부고시 2015-292호)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지구계 조정(달성2차일반산업단지 면적 일부 축소)사항을 반영한 면적임

2)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431,353.3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362,429.8	84.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8,647.3	36.8	
	제3종일반주거지역	203,782.5	47.2	
상 업 지 역	소 계	39,309.7	9.1	
	일 반 상 업 지 역	39,309.7	9.1	
녹 지 지 역	소 계	29,613.8	6.9	
	자 연 녹 지 지 역	29,613.8	6.9	

※ 금회 기정면적은 기 고시(국토교통부고시 2015-76호, 국토교통부고시 2015-292호)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지구계 조정(달성2차일반산업단지 면적 일부 축소)사항을 반영한 면적이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교통시설 (변경없음)

■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23	50	보조간선도로	3,800 (672)	구지면 응암리 광로3-19	구지면 유산리 광로3-17	일반도로	-	대고 제1999-38호 (99.4.20)	
기정	중로	1	259	20	집산도로	353 (236)	광로 2-23	대로 3-49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중로	1	260	20	집산도로	386	광로 2-23	중로 2-31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중로	2	315	15 ~19	집산도로	1,744 (662)	광로 2-23	광로 3-17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중로	3	283	12	집산도로	1,035	중로 1-259	중로 1-259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중로	3	284	12	집산도로	299	중로 1-260	중로 2-31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중로	3	285	12	집산도로	647	중로 1-260	중로 2-31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중로	3	286	12	집산도로	197	중로 1-260	중로 3-28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구22	10	국지도로	73	소로 1-구23	소로 1-구23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1	구23	10	국지도로	253	중로 3-283	중로 3-283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1	구24	10	국지도로	244	중로 3-285	중로 3-28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1	구25	10	국지도로	82	중로 3-286	중로 3-28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1	구26	10	국지도로	96	중로 3-286	중로 3-28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55	8	국지도로	370	중로 1-259	소로 2-구5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56	8	국지도로	70	소로 2-구55	소로 2-구5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57	8	국지도로	20	중로 1-259	소로 2-구5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58	8	국지도로	528	중로 3-283	중로 3-283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59	8	국지도로	315	소로 2-구58	소로 2-구58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60	8	국지도로	76	중로 3-283	소로 2-구58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61	8	국지도로	75	중로 3-283	소로 2-구58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62	8	국지도로	466	중로 3-284	중로 3-284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63	8	국지도로	271	소로 2-구62	소로 2-구62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64	8	국지도로	69	중로 3-284	소로 2-구62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65	8	국지도로	69	중로 3-284	소로 2-구62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66	8	국지도로	15	소로 2-구62	소로 2-구72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구67	8	국지도로	339	중로 3-285	중로 3-285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68	8	국지도로	164	중로 3-285	소로 2-구67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69	8	국지도로	94	소로 2-구68	소로 2-구67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70	8	국지도로	26	소로 2-구67	소로 2-구68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71	8	특수도로	14	광로 2-23	소로 2-구55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72	8	특수도로	16	광로 2-23	소로 2-구66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2	구73	8	특수도로	18	소로 1-구24	소로 2-구67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3	구51	6	특수도로	53	중로 1-259	중로 3-283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3	구52	6	특수도로	20	광로 2-23	소로 2-구55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3	구53	6	특수도로	95	광로 2-23	중로 3-283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3	구54	6	특수도로	9	중로 2-315	소로 3-구55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3	구55	6	국지도로	10	소로 2-구62	소로 3-구54	일반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3	구56	6	특수도로	36	광로 2-23	소로 2-구62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3	구57	6	특수도로	16	광로 2-23	소로 2-구67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3	구58	6	특수도로	28	소로 2-구68	소로 2-구67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3	구59	6	특수도로	27	소로 2-구69	소로 2-구68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기정	소로	3	구60	6	특수도로	14	중로 3-285	소로 2-구69	보행자 전용도로	-	대고 제2004-2호 (04.1.10)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8	6	특수도로	28 (10)	소로 3-27	광로 2-23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 (‘09.09.30)	
기정	소로	3	41	6	특수도로	32 (15)	소로 2-45	중로 2-283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 (‘09.09.30)	
기정	소로	3	42	6	특수도로	23 (16)	소로 3-43	중로 2-283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 (‘09.09.30)	

주 : ()는 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2) 공간시설 (변경없음)

■ 공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37,306.7		
기정	74	창리공원	근린공원	응암리 1177공	29,613.8	대고 제1999-38호 (‘99.4.20)	주거단지
기정	308	주거단지 제1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리 1181-3공	1,780.2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기정	309	주거단지 제2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리 1191-5공	1,951.0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기정	310	주거단지 제3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리 1198-4공	2,232.4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기정	311	주거단지 제4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응암리 1215-5공	1,729.3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 녹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29,120.6		
기정	121	주거단지 제1호녹지	완충녹지	응암리 1183공 일원	9,236.0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기정	122	주거단지 제2호녹지	완충녹지	응암리 1194공 일원	4,142.3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기정	123	주거단지 제3호녹지	완충녹지	응암리 1195공 일원	5,882.0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기정	124	주거단지 제4호녹지	완충녹지	응암리 1213공 일원	9,860.3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 금회 기정면적은 기 고시(국토교통부고시 2015-76호, 국토교통부고시 2015-292호)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지구계 조정(달성2차일반산업단지 면적 일부 축소)사항을 반영한 면적임

3)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 학교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A232	주거단지 제1호초등학교	초등학교	응암리 1211학	12,838.5	대고 제2004-2호 ('04.1.10)	주거단지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BL3	2,197.7	1	213.9	
			2	220.0	
			3	220.1	
			4	219.9	
			5	220.0	
			6	220.0	
			7	221.1	
			8	221.0	
			9	221.0	
			10	220.7	
4	BL4	2,641.9	1	217.9	
			2	214.0	
			3	198.7	
			4	198.3	
			5	216.3	
			6	222.6	
			7	216.0	
			8	216.2	
			9	222.2	
			10	228.2	
			11	245.6	
			12	245.9	
5	BL5	1,104.8	1	218.4	
			2	223.4	
			3	223.1	
			4	223.0	
			5	216.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6	BL6	1,181.8	1	226.7	
			2	239.5	
			3	238.5	
			4	238.3	
			5	238.8	
7	BL7	1,873.0	1	305.1	
			2	317.1	
			3	316.5	
			4	315.7	
			5	315.4	
			6	303.2	
15	BL15	4,264.4	1	257.6	
			2	256.7	
			3	242.1	
			4	250.6	
			5	247.4	
			6	243.0	
			7	263.1	
			8	243.4	
			9	238.2	
			10	234.1	
			11	234.3	
			12	261.6	
			13	303.2	
			14	295.8	
			15	234.5	
			16	233.0	
			17	225.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²)	
16	BL16	3,524.9	1	199.6	
			2	210.2	
			3	214.2	
			4	223.1	
			5	222.7	
			6	222.1	
			7	221.6	
			8	214.9	
			9	216.0	
			10	222.7	
			11	222.2	
			12	221.5	
			13	221.0	
			14	228.9	
			15	232.3	
			16	231.9	
17	BL17	3,185.9	1	223.0	
			2	229.7	
			3	229.6	
			4	229.4	
			5	229.5	
			6	229.3	
			7	222.9	
			8	222.9	
			9	229.2	
			10	229.3	
			11	229.4	
			12	229.4	
			13	229.5	
			14	222.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18	BL18	3,184.9	1	222.8	
			2	229.3	
			3	229.3	
			4	229.3	
			5	229.2	
			6	229.3	
			7	223.0	
			8	222.9	
			9	229.2	
			10	229.3	
			11	229.3	
			12	229.4	
			13	229.5	
			14	223.1	
19	BL19	1,380.0	1	232.4	
			2	231.9	
			3	225.8	
			4	226.0	
			5	232.1	
			6	231.8	
20	BL20	2,938.4	1	201.5	
			2	224.8	
			3	243.4	
			4	243.6	
			5	226.1	
			6	208.3	
			7	216.5	
			8	209.9	
			9	244.7	
			10	277.9	
			11	249.9	
			12	200.1	
			13	191.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21	BL21	1,914.9	1	272.3	
			2	272.6	
			3	273.0	
			4	273.4	
			5	274.0	
			6	274.6	
			7	275.0	
22	BL22	1,853.0	1	229.5	
			2	234.1	
			3	234.0	
			4	234.0	
			5	234.1	
			6	234.0	
			7	234.2	
			8	219.1	
23	BL23	930.0	1	228.0	
			2	236.0	
			3	236.0	
			4	230.0	
24	BL24	2,655.8	1	286.1	
			2	267.8	
			3	267.9	
			4	268.1	
			5	260.9	
			6	254.2	
			7	260.4	
			8	260.2	
			9	260.1	
			10	270.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25	BL25	2,814.5	1	254.9	
			2	255.9	
			3	256.0	
			4	256.9	
			5	257.0	
			6	257.4	
			7	257.9	
			8	258.3	
			9	257.0	
			10	256.0	
			11	247.2	
26	BL26	2,523.2	1	249.3	
			2	254.7	
			3	254.7	
			4	254.7	
			5	247.9	
			6	248.8	
			7	254.6	
			8	254.8	
			9	255.0	
			10	248.7	
27	BL27	2,570.1	1	253.6	
			2	259.2	
			3	259.3	
			4	259.4	
			5	253.0	
			6	254.0	
			7	259.7	
			8	259.8	
			9	259.7	
			10	252.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28	BL28	2,567.7	1	253.7	
			2	259.2	
			3	259.0	
			4	258.8	
			5	252.3	
			6	254.1	
			7	259.3	
			8	259.4	
			9	259.3	
			10	252.6	
29	BL29	2,524.5	1	249.5	
			2	255.1	
			3	255.0	
			4	255.0	
			5	247.7	
			6	249.3	
			7	255.2	
			8	255.0	
			9	254.8	
			10	247.9	
30	BL30	1,638.1	1	234.8	
			2	235.8	
			3	236.0	
			4	236.8	
			5	236.9	
			6	237.0	
			7	220.8	
42	BL42	1,085.9	1	219.1	
			2	218.9	
			3	218.0	
			4	217.9	
			5	212.0	
43	BL43	1,111.7	1	216.1	
			2	228.9	
			3	226.3	
			4	226.4	
			5	214.0	
44	BL44	903.1	1	223.1	
			2	232.1	
			3	226.9	
			4	221.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45	BL45	3,528.8	1	251.9	
			2	255.4	
			3	205.8	
			4	208.9	
			5	250.9	
			6	253.9	
			7	199.0	
			8	223.6	
			9	202.3	
			10	243.4	
			11	248.2	
			12	236.4	
			13	242.7	
			14	257.4	
			15	249.0	
46	BL46	2,717.6	1	250.7	
			2	238.4	
			3	253.9	
			4	275.8	
			5	289.0	
			6	319.7	
			7	263.0	
			8	264.7	
			9	265.6	
			10	296.8	

2)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2	BL2	60,847.0	1	60,847.0	
31	BL31	40,271.2	1	40,271.2	
32	BL32	43,285.9	1	43,285.9	

3) 근린생활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41	BL41	1,696.3	1	435.9	
			2	420.4	
			3	419.9	
			4	420.1	

4) 상업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8	BL8	1,934.8	1	594.3	
			2	463.8	
			3	447.2	
			4	429.5	
10	BL10	1,918.2	1	322.1	
			2	321.6	
			3	314.1	
			4	317.0	
			5	322.2	
			6	321.2	
11	BL11	1,275.0	1	424.8	
			2	425.1	
			3	425.1	
14	BL14	1,876.9	1	309.4	
			2	314.9	
			3	314.0	
			4	316.1	
			5	314.9	
			6	307.6	
33	BL33	1,654.6	1	406.8	
			2	420.6	
			3	420.6	
			4	406.6	
35	BL35	2,546.6	1	303.7	
			2	323.8	
			3	332.1	
			4	331.9	
			5	332.0	
			6	308.0	
			7	307.6	
			8	307.5	
36	BL36	2,774.7	1	350.1	
			2	347.2	
			3	349.1	
			4	348.2	
			5	344.0	
			6	340.2	
			7	347.9	
			8	348.0	
38	BL38	1,833.6	1	460.5	
			2	463.4	
			3	462.9	
			4	446.8	

5)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학교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40	BL40	12,838.5	1	12,838.5	

■ 유치원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12	BL12	1,153.7	1	1,153.7	
39	BL39	873.0	1	873.0	

■ 종교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1	BL1	1,252.6	1	1,252.6	

■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9	BL9	624.1	1	624.1	
13	BL13	666.6	1	666.6	
34	BL34	803.6	1	803.6	
37	BL37	732.7	1	732.7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 (3~7, 15~30, 42~46)	단독주택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내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3세대 이하)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단,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중 40% 미만에서 근린생활시설(1층에 한한다) 허용	
		건 폐 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60%이하	
		용 적 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범위내의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 : 180%이하	
		높 이	최고층수	3층이하
			최저층수	-
		형 태	-	
		색 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함	

2)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 (2,31, 32)	공동주택 용 지	용 도	•지정용도 -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 아파트(공동2,31,32) : 25%이하	
		용 적 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범위내의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 - 아파트(공동2,31,32) : 220%이하(도면참조)	
		높 이	최고층수	•25층이하 •단독주택지변 일정구간(20m이하):10층이하 (공동2, 공동31)
			최저층수	-
		배 치	•주동의 최대길이는 100m 이내로 계획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6m	
		형 태	-	
		색 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함	

※ 블록별 세대수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학교, 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계획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계획 세대수의 5% 범위 내 조정 가능

3) 근린생활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생활 (41)	근린생활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 시설은 불허	
		건 폐 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50%이하	
		용 적 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최저층수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2m	
		형 태	-	
		색 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함	

4) 상업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 (8,10,11, 14,33, 35,36,38)	상 용 지	용 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용도의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동식물원 -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제 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제10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제11호의 숙박시설 - 제12호의 위락시설 - 제13호의 공장 - 제14호의 창고시설 -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석유판매소에 제외) -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단, 방송국, 전신전화국 제외) -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건 폐 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70%이하
		용 적 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범위내 - 간선부(8,33,38) : 800% 이하 - 이면부(10,11,14,35,36) : 5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간선부(8,33,38) : 16층 - 이면부(10,11,14,35,36) : 10층
			최저층수 - 간선부(8,33,38) : 3층 - 이면부(10,11,14,35,36) :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2m
		형 태	-
		색 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함

5)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학교 (40)	학교	용 도	•지정용도 - 학교시설 및 그 부대시설	
		건 폐 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50%이하	
		용 적 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최저층수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6m	
		형 태	-	
유치원 (12,39)	유치원	색 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함	
		용 도	•지정용도 - 유치원 및 그 부대시설(건축물 연면적의 1/2범위 미만에서 보육시설)	
		건 폐 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50%이하	
		용 적 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최저층수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2m	
		형 태	-	
		색 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함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 (1)	종교	용 도	•지정용도 - 종교시설 및 그 부대시설	
		건 폐 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50%이하	
		용 적 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최저층수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2m	
		형 태	-	
주차장 (9,13, 34,37)	주 차 장	색 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함	
		용 도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하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차장법에 적합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	
		건 폐 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70%이하	
		용 적 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500%이하	
		높 이	최고층수	10층 이하
			최저층수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2m	
		형 태	-	
		색 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함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공동주택 (2)	공동주택용지	• 공공보행통로 내에는 담장, 화단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효율적인 근린공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함 • 단, 전체 보행체계의 변경이 없는 20M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보행진·출입부의 경우는 일치되게 조성하여야 함	세부사항 도면참조

2)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 계획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상업용지 기타시설용지	•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발생한 전면공지는 도로(보도가 있는 도로는 보도)와 면하여 동일한 높이로 조성 • 단, 조성 시에 보행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일절 금지하되, 조정공간으로서의 보행공간은 허용	세부사항 도면참조

3)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공동 (2,31,32) -	공동주택용지	• 담장의 높이는 도로지표면부터 1.2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음 • 으며, 개방감을 가질수 있도록 투시가 가능한 자재를 사용 • 단, 수목으로 경계부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높이의 제한 미적용	
상업 (8,10,11,14, 33,35,36,38)	상업용지	• 모든획지에는 담장, 철책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 설치금지	

4)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변경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기타시설용지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차량출입불허구간 내에서 차량진출입은 불허	세부사항 도면참조

4. 시행지침 (변경)

가.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한다)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달성2차일반산업단지(산업단지, 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세부 지침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계획, 교통영향저감방안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의 법규나 대구광역시 및 달성군 관련조례에 따른다
- ②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유도사항 포함)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사항이다
- ③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기존의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동 시행지침의 규제계획 내용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블록”이라 함은 도시계획도로 등에 의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3. “지정용도”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에서 특정한 용도만을 정한 것을 말한다.
 4. “허용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합리적인 건축용도를 허용하여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를 말한다
 5.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6. “건폐율”이라 함은 건축법 제55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7.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56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8.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9.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주요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
10. “벽면한계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에 있어서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11. “피로티구조”라 함은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키고 유효높이가 4m 이상인 것을 말한다.
12. “투시형벽면”이라 함은 어느 한 벽면이 벽면적의 50%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한 벽면을 말한다.
13. “투시형셔터”라 함은 전체의 50%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14. “담장설치불허구간”이라 함은 도시미관 및 기능상 담장 설치를 불허하여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행자전용도로변 또는 주민옥외 휴게·운동·레크레이션 시설 등이 입지한 구간에 지정한 것을 말한다.
15.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지정으로 대지 안에 생겨난 공지를 말한다
16.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32조에서 정의하는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17.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이 구간에서는 접하는 도로로부터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을 말한다.
18. 본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나. 획지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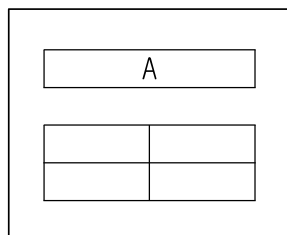
제4조 (획지의 분합)

- ① 획지는 당해 구역 내 산업시설용지, 상업용지에 한하여 합병이 가능하며 합병된 획지는 합병전 각 획지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받으며, 각 획지간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강화된 획지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적용한다.
- ② 합병된 획지를 다시 분할하고자 할 때는 합병전의 획지분할선으로 한정한다.
- ③ 산업시설용지는 획지 분할이 가능하며, 분할 시 최소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용도와 밀도에 관한 사항

제5조 (용도의 제한)

- ① 용도제한이 표시된 획지에서는 국토계획법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에 대하여 허용한 용도라도 그 구분에 따라 다음 용도제한표에 열거된 용도에 대하여 규제를 받는다.
- ② 토지이용별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상의 용도규정을 준수하여 이를 지정·허용·불허용도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③ 도시계획시설 및 시설예정지내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22조의 내용을 준수한다.
- ④ 민간대지내의 가설건축물의 경우 지역개발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가설건축물에 한한다.
- ⑤ 단독주택용지의 획지당 거주가구수는 3가구 이내로 하며,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⑥ 도면표시



: 건축물 용도 A

건축물 용도계획 (산업단지)

도면 표시	구 분	지 정 용 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산업 (1)	산업 시설 용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유치업종에 한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원 (2)	지원 시설 용지	-	• 2-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14호의 업무시설 - 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 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2-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14호의 업무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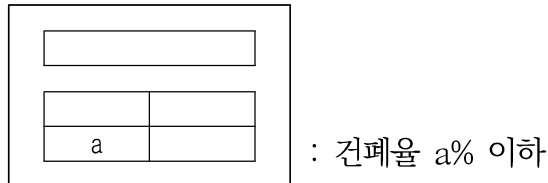
건축물 용도계획 (주거단지)

도면 표시	구 분	지 정 용 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단독 (3~7, 15~30, 42~46)	단독 주택 용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내의 단독주택, 다가 구주택(3세대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 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1 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단,「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중 40% 미만에서 근 린생활시설(1층에 한한다) 허용.	-
공동 (2,31, 32)	공동 주택 용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근린 생활 (41)	근린 생활 시설 용지	•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도 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일 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 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 종근린생활시설 - 단,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 지시설은 불허	-	-

도면 표시	구 분	지 정 용 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상업 (8,10, 11,14, 33,35, 36,38)	상업 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에 의거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용도의 건축물 중 불허 용도를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1호의 단독주택 - 제 2호의 공동주택 - 제 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동식물원 - 제 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 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제 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 병원, 장례식장 - 제10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 스텔 - 제11호의 숙박시설 - 제12호의 위탁시설 - 제13호의 공장 - 제14호의 창고시설 -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 리시설(단, 주유소, 석유판매 소에 제외) -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단, 방송국, 전신전화국 제외) -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학교 (40)	학교	학교시설 및 그 부대시설	-	-
유치원 (12,39)	유치원	유치원 및 그 부대시설 (건축물 연면적의 1/2범위 미 만에서 보육시설)	-	-
종교 (1)	종교	종교시설 및 그 부대시설	-	-
주차장 (9,13, 34,37)	주차장	노외주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 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일반상업지역내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차장법 에 적합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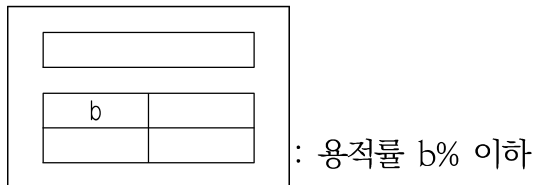
제6조 (건폐율)

- ① 각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② 특별히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수한다.
- ③ 도면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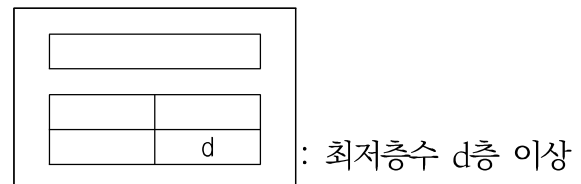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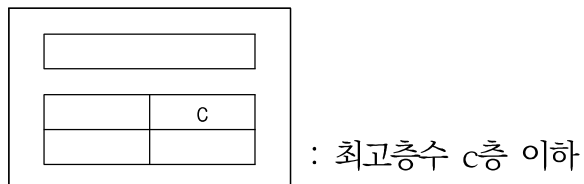
제7조 (용적률)

- ① 각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② 특별히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수한다.
- ③ 건축물 밀도(용적률, 건폐율, 높이)는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적용한다.
- ④ 도면표시



제8조 (높이)

- ① 각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결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② 건축물은 건물높이에 따른 유형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제시된 최고높이 내에서 건물의 높이를 임의로 선택하되 획일적인 계획으로 단지경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도면표시



건축물 밀도계획 (산업단지)

구 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최저층수	비 고 (도면번호)
산업시설용지	80	350	-	-	1
지원시설용지	80	400	-	-	2

건축물 밀도계획 (주거단지)

구 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최저층수	비 고 (도면번호)
단독주택용지		60	180	3	-	3~7,15~30,42~46
공동주택용지		25	220	25	-	2,31,32
				10		단독주택지변일정구간(20m이내) : 2,31
상업 용지	간선부	70	800	16	3	8,33,38
	이면부	70	500	10	-	10,11,14,35,36
근린생활시설용지		50	250	5	-	41
학 교		50	250	5	-	40
유 치 원		50	250	5	-	12,39
종 교		50	250	5	-	1
주 차 장		70	500	10	-	9,13,34,37

라. 건축물 배치 및 형태의 계획

제9조 (건축선 계획)

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그에 합당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구 분	규 모	적 용 구 간
건축한계선	6m	학교, 공동주택용지
	2m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유치원, 종교용지, 주차장
	1m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② 도면표시



: 건축한계선

제10조 (건축물의 배치)

- ①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와 관련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의 거리에 따라 정하는 높이에 의한다.
- ②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도록 한다.
- ③ 보행자 전용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로부터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1조 (전면공지)

- ①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로서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과 보행인의 통행에 용이한 구조로 조성해야 한다.(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는 녹지대의 설치가 가능하다.)
- ② 전면공지내에는 시설물설치를 금지한다.
- ③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기존 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하여야 한다. 단, 지원시설용지 및 학교용지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공개공지)

- ① 상업용지 등 일부에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 대지내 공개공지 (대지면적의 5%이상, 조경면적포함)를 조성할 수 있고, 외부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설치시설은 벤치, 파고라 등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공동주택 단지내 공지)

- ① 단지내 도로 및 주 보행통로의 결절부는 광장을 조성하여 단지의 중심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② 아파트 진출입구와 단지내 도로 및 주보행동선은 교목식재 등으로 방향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대지안의 조경)

- ①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20조에 의하여 조경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공개공지가 지정된 경우 조경면적에 포함한다.
- ③ 대로 2-96호선 변 지원시설용지 내 기 설치된 조경은 보행 등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훼손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원형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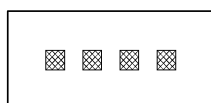
바.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차량출입 불허구간)

- ①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지역에서는 차량출입을 허용한다.

제16조 (공동주택단지내 보행동선)

- ① 보도는 최소폭 1.8m 이상 확보한다.
- ②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0cm 이내로 하고, 단지내 횡단보도는 평탄형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험프형으로 설치한다.
- ③ 지구단위계획지침도상에 표시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개념적인 표현이며, 단지내 보행통로를 설치시 수용해야 한다.
- ④ 도면표시



: 공공보행통로

사. 기타사항

제17조 (담 또는 울타리, 대문)

- ① 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2m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넝쿨장미 등 포함)
- ② 단독주택용지의 대문은 투시형으로 권장